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6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이 준공(2015.11.18.)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위치 및 기능 (안 제3조 및 제4조)
 ○ 운영 및 관리 (안 제5조)
 ○ 생산 및 공급 계획 (안 제6조)
 ○ 공급대상 등 (안 제7조)
 ○ 공급의 제한(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22조
 나. 예산조치 : 159,636천원 정도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6. 10. 13. ~ 11. 2.)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원안동의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 미생물”이란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 친환경 농·축산업에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친환경 미생물 생산”이란 유용 미생물을 증식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친환경 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 정화를 위하여 유용 미생물을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배양실은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479에 소재한 성주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 미생물의 연구에 관한 사항
2. 배양실의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배양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업무는 성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장한다.

제6조(생산 및 공급 계획) 군수는 친환경 미생물 생산 시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대상 및 가격) ① 친환경 미생물 공급은 성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한다.

1. 성주군 관내에서 농·축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2. 다른 지역에서 농·축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3. 그 밖에 공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

② 친환경 미생물의 공급가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 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하수 처리장 및 가축 매몰지의 악취제거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친환경 미생물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2. 친환경 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생산시설의 한계로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친환경 미생물 공급에 따른 공급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신청자가 사전연락 없이 친환경 미생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6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군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 없으므로 삭제(제1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제75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6. 10. 6 ~ 10. 25)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② (생 략)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모든 책임을 진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